

#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입주자모집공고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신설 초등학교 설립 전까지 용흥초등학교로 학생 배치가 되며 사업주체에서 통학 대책을 수립하여 통학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ttp://pentacity-iwish.com>)와 견본주택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 및 미성년자는 관람이 불가하오니 관람예약 시 참고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 본인에 한하여 청약자격 확인용 서류제출 및 분양계약체결 목적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가능 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입국자
- 기타 진행요원의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분양 상담 전화(054-286-73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9.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대대금 완납일’(실거려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entacity-iwish.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이에 본 아파트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지세법」 제8조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1월 10일(월)	01월 11일(화)	01월 12일(수)	01월 18일(화)	02월 07일(월) ~ 02월 09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당사 건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4000호(2021.1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5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 총 522세대 중 일반공급 223세대  
[특별공급 299세대(일반[기관추천] 36세대, 경제자유구역 52세대, 다자녀가구 52세대, 신혼부부 72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7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 자유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991	01	084.9929A	84A	84.9929	27.9648	112.9577	66.8304	179.7881	43.6821	210	21	21	21	42	6	42	153	57	2	
		02	084.9929B	84B	84.9929	27.9648	112.9577	66.8304	179.7881	43.6821	74	7	7	7	15	2	15	53	21	3	
		03	084.9610C	84C	84.9610	28.2415	113.2025	66.8054	180.0079	43.6657	75	8	8	8	15	2	15	56	19	1	
		04	117.0757	117	117.0757	37.4554	154.5311	92.0575	246.5886	60.1711	158	0	16	16	0	5	0	37	121	2	
		05	148.7580	148	148.7580	48.4412	197.1992	116.9695	314.1687	76.4543	1	0	0	0	0	0	0	0	0	1	0
		06	165.3210	165	165.3210	54.1494	219.4704	129.9931	349.4635	84.9668	2	0	0	0	0	0	0	0	0	2	0
		07	199.6477	199	199.6477	63.3052	262.9529	156.9845	419.9374	102.6091	2	0	0	0	0	0	0	0	0	2	0
합 계											522	36	52	52	72	15	72	299	223	8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29A	084.9929B	084.9610C	117.0757	148.7580	165.3210	199.6477
약식표기	84A	84B	84C	117	148	165	199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동(라인)	층별	세 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1개월내)	22-05-05	22-09-05	23-02-05	23-08-05	24-01-05	24-06-05		
84A	104동	11층이상	136	39,522,000	300,378,000	-	339,900,000	10,000,000	2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101,970,000
		5-10층	48	39,522,000	295,378,000	-	334,900,000	10,000,000	2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33,490,000	100,470,000
		105동	16	39,522,000	290,378,000	-	329,900,000	10,000,000	2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98,970,000
		106동	8	39,522,000	280,378,000	-	319,900,000	10,000,000	21,990,000	31,990,000	31,990,000	31,990,000	31,990,000	31,990,000	31,990,000	31,990,000	95,970,000
		1층	2	39,522,000	270,378,000	-	309,900,000	10,000,000	2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92,970,000
84B	101동	11층이상	47	39,522,000	302,378,000	-	341,900,000	10,000,000	2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102,570,000
		5-10층	18	39,522,000	297,378,000	-	336,900,000	10,000,000	2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101,070,000
		102동	6	39,522,000	292,378,000	-	331,900,000	10,000,000	23,190,000	33,190,000	33,190,000	33,190,000	33,190,000	33,190,000	33,190,000	33,190,000	99,570,000
		104동	3	39,522,000	282,378,000	-	321,900,000	10,000,000	2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96,570,000
84C	101동	11층이상	47	39,507,000	298,393,000	-	337,900,000	10,000,000	2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33,790,000	101,370,000
		5-10층	18	39,507,000	293,393,000	-	332,900,000	10,000,000	2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33,290,000	99,870,000
		102동	6	39,507,000	288,393,000	-	327,900,000	10,000,000	2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32,790,000	98,370,000
		104동	3	39,507,000	278,393,000	-	317,900,000	10,000,000	2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31,790,000	95,370,000
		1층	1	39,507,000	268,393,000	-	307,900,000	10,000,000	2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92,370,000
117	101동	11층이상	102	54,441,000	372,235,000	37,224,000	463,900,000	10,000,000	3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5-10층	36	54,441,000	367,690,000	36,769,000	458,900,000	10,000,000	35,890,000	45,890,000	45,890,000	45,890,000	45,890,000	45,890,000	45,890,000	45,890,000	137,670,000
		102동	12	54,441,000	363,145,000	36,314,000	453,900,000	10,000,000	3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136,170,000
		103동	6	54,441,000	354,054,000	35,405,000	443,900,000	10,000,000	3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133,170,000
		1층	2	54,441,000	344,963,000	34,496,000	433,900,000	10,000,000	3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130,170,000
148	104동	29층	1	69,173,000	482,479,000	48,248,000	599,900,000	10,000,000	4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179,970,000
165	102동 104동	29층	2	76,875,000	539,114,000	53,911,000	669,900,000	10,000,000	5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200,970,000
199	102동 103동	29층	2	92,838,000	642,784,000	64,278,000	799,900,000	10,000,000	69,990,000	79,990,000	79,990,000	79,990,000	79,990,000	79,990,000	79,990,000	79,990,000	239,97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 85㎡ 초과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형별, 층별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분양금액은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및 일부 부대복리시설 중 별도 분양대상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117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2	2	0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0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0	4
	중소기업 근로자	5	1	2	0	8
	장애인	5	2	2	0	9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1	7	8	16	5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1	7	8	16	52
신혼부부 특별공급		42	15	15	0	7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2	2	5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42	15	15	0	72
합 계		153	53	56	37	29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41 2128 1324">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기타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2세대

- 대상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이 선정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함)의 종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 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대구경북 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가 선정되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청약통장 가입 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 유의사항

1.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며,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여부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에 의거 “당첨자”로 간주되며,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 모든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포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7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7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산보유기준표 「참고」
- ※ 1인 가구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4.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포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함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셔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1.1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2.01.1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ul>
	2순위	2022.01.12(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감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감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li> <li>※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li> <li>※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당점자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신청자 구비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90일, 연간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모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기관추천(일반)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신청자 구비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 구비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청자 구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건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 구비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건본주택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 비사업자의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청자 구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확인	
		○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고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1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청자 구비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구비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재직회사	* 재직회사 발급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신청자 구비
	○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 재직회사 발급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	본인	* 재직회사 인감 날인된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 필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본인	* 재직회사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건본주택 비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서	-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		무주택 서약서	-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		청약통장 가입 증빙 확인서류	본인	*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마이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이용시간 09:00~17:30) -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 충족시 청약가능	-
내국인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기타	-	* 추후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	*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청자 구비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본인	*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재직회사	* 법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 구비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2005.07.0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당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무처 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2.01.18.(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02.07.(월)~2022.02.09.(수)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296)</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시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수 없음(단, 일반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 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된 주택은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pentacity-iwish.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1.18 (화) ~ 2022.01.27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1.18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2.01.19(수) ~ 2022.01.25(화)]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당사에서 통지받은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통지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2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서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는 없음.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홈페이지(<http://pentacity-iwish.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 입장이 가능함. (사전관람 예약 미예약 시 입장 불가)
  - 서류제출 장소 :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견본주택(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296번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 함.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당첨자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신청자 구비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90일, 연간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구비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 체결 기간	장소	비고
2022.02.07.(월)~2022.02.09.(수) 3일간 (10:00~16:00)	포항 펜타시티 동화아아위시 견본주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296)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 후 해당일 방문 - 당첨자(또는 대리인) 포함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전화 : 054-286-7300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기본서류 (특별공급포함)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절대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여 인정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절대 불가)
	○	위임장	-	- 대리인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추후, 계약 시 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함.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함.(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다만, 우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인지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2021.01.01.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후 인지세 미납시 기간별 가산세가 자동 부과(본세의 최대 300% 상당액)됩니다. 따라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양 계약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인지세를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발급하여 계약시 지참하여야 합니다.(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차후 소유권이전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보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및 설계사항 등 모든 사항과 계약서 내용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의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함.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함.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01-8727-01	(주)동화건설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하지 않음)로 납부하여야 하며, 호실별 금액이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1101호 계약자 → '1011101홍길동')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용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료는 계약자가 대출신청시 납입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DTI, LTV, DSR, RTI 등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분양금액의 10%(계약금) 완납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개인별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금액(미납금액, 연체료 포함)을 본인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요구로 분양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으로 함)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해당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금액(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외국인 및 외국법인, 기타 정책 및 금융회사의 대출적격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자납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 검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Ⅷ 별도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유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3,200,000	640,000	2,560,000
84B	3,200,000	640,000	2,560,000
84C	3,300,000	660,000	2,640,000
117	4,100,000	820,000	3,280,000
148	3,600,000	720,000	2,880,000
165	3,600,000	720,000	2,880,000
199	3,600,000	720,000	2,880,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01-8719-21	(주)동화건설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셔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잔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된 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영업일 익일 기준으로 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견본주택 세대내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추가 품목은 개별 품목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시 추가 설치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비확장시에는 추가 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탈출형 대피시설의 형태, 마감, 출입문 및 마감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탈출형 대피시설의 위치에 따라 결로, 단열, 미관,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발코니확장 공간에 해당되는 각종 기본제공품목(무상옵션)의 제공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추가선택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타입)	선택안	설치대수(실내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05.05.	입주지정일	
84A	선택1	2	거실,침실1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삼성전자
84B	선택2	4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C								
117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148	선택1	4	거실,주방,침실1,알파룸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165	선택2	8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가족실,알파룸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199								

- 상기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매립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거실/안방의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05.05.	입주지정일		
빌트인가전	식기세척기	LG전자(주)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DUB22SB
	신발살균기	(주)쿠스코	200,000	20,000	20,000	160,000	ZPP-14U
	현관 먼지 흡입기	(주)그렉스	600,000	60,000	60,000	480,000	AS-150, DSC-300

	오브제 (개별설치불가)	1도어 냉장고	LG전자(주)	84A,84B,84C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BC1L1AA1(G)
		1도어 냉동고							BC1F1AA(G)
		1도어 김치냉장고							BC1K1AA1(G)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BIS)		LG전자(주)	117,148,165,199	5,500,000	550,000	550,000	4,440,000	S711SI24B
빌트인 김치냉장고(BIK)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K221PR14BL1/R1	
인테리어 특화 (바닥타일)	포세린 (선택1)		국내산	84A,84B,84C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거실+복도+주방
	폴리싱 (선택2)		수입산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포세린 (선택1)		국내산	117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폴리싱 (선택2)		수입산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포세린 (선택1)		국내산	148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폴리싱 (선택2)		수입산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포세린 (선택1)		국내산	165,199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폴리싱 (선택2)		수입산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3)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01-8722-11	㈜동화건설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셔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람.
-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된 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영업일 익일 기준으로 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거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바닥재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각실 바닥 미장 마감(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벽지, 벽 도장(발코니,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및 스위치의 배관배선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일반가구	신발장, 불박이장, 기타수납장	
주방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 소화기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하향식피난기구 도어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하향식 피난기구 및 난관

3.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84A		84B		84C		117		148	165	199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금액	106동	30,193,593	101동	30,193,593	101동	30,259,028	101동	41,908,834	53,628,322	59,684,975	71,510,041
	104동 105동	30,684,959	102동 104동	30,684,959	102동 104동	30,751,459	102동 103동	42,604,224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단, 마이너스옵션의 선택과 미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 선택해야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나,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업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IX 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의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계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음. (단, 위치,수량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LIGHT(지하 채광을 위하여 지상으로 낸 천창),외부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면적은 각각 별도로 분할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 내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주)포항융합티앤아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포항융합티앤아이이며,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공개공지, 전면공지, 완충녹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저류조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환경권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주)포항융합티앤아이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북측으로 근린공원, 23M도로, 상업지역 서측으로 근린공원(3,저류지포함), 동측으로 공공청사가 위치함.
- 택지 내 저류지는 계절 및 기상상황에 따라 물이 상당기간 고여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옹벽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의 형태, 미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계획은 인접 사업지 및 기반시설의 공사계획 및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실시공사 옹벽의 종류, 디자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및 인접지의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지 주변의 주유소, 기타 주변 (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송전선로 철탑 위치 및 현황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당 사업지 주택사업승인 신청으로 증가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예정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되어 있으나 교육청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는 사업시행사와는 무관함.
- 초등학생의 경우 인접한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신설 시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이동형 모듈러 교실 포함 교육시설물 증축)를 전제로 용흥초등학교(통학거리 약 5km)로 배정될 예정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여야 하며, 이는 포항교육지원청 협의 사항으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포항교육지원청 협의에 따라 용흥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하고, 새로운 통학대책 수립 시까지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사업주체 부담으로 등·하교 시간에 통학차량을 운영할 계획임.
- 택지 내 학교 신설,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사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 준공시 당 사업장 부지의 확정 경계 및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판상 및 타워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예정위치는 설치심의 신청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배치도/시설물설치계획도 등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하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차량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 접근 불가 또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통합)로비로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필로티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면하는 구조로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대, 재활용품보관창고, 자전거보관소, DA, TOP-LIGHT 채광창, 외부계단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용부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주동출입,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동 지하 피트내부에는 배수를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주동의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최대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을 위한 TOP-LIGHT,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비상차로 및 쓰레기처리 차량이외에 일반차량은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단지 출입구는 단지 북측 아파트 전용 주차장 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301동 후면에 근린상가용 지상주차장 3대가 설치됨.
- 단지북측의 전면공지에 가로공원 출입구가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공간으로 개방되어야 함으로 추후 담장 및 별도의 출입시설설치가 불가함.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시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함.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내 외부시설물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물놀이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재활용분리수거창고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저층부 석재의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난간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부대복리시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분/구획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차로, 통로 등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민공동시설

- 101동 지하 1층에 게스트하우스(212동) 1호실(지하주차장 및 외부 연계)이 설치되며, 주방가구를 제외한 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음.
- 103동 필로티층에 경로당이 설치됨.
- 103동 전면에 어린이집이 설치됨.
- 101동 전면 지하1~지상1층에 지하1층: 피트니스, GX, 샤워/탈의실, 휴게공간,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퍼팅존 / 지상1층: 북카페, 입주민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설치됨
- 부대시설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 명칭, 실 배치는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지상,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
-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존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내측 창호 하부에 골조벽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그릴창 및 방화도어가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확장형 선택시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발코니는 실시간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출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간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옥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옥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함.

- 본 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견식고정 벽체임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평면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및 거실벽의 인조대리석 마감시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마루, 타일등)
-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방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 안목/치수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 ■ 석재/타일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아트월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및 주방벽체)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스러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세탁부탁,부부욕실의 샤워부스턱은 타일구배에 따라 그 높이가 다르게 시공될수 있음.
- 본 공사시 복도 및 거실에 설치되는 아트판 줄눈의 폭, 깊이는 변경 될수 있음.

#### ■ 창호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창호는 아파트 안방 외창, 거실 외창 및 거실 측면(해당세대) 외창은 입면분할창이 설치되며, 기타 침실, 배면부에 설치되는 각부의 창호는 일반 발코니창호가 설치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안방 분합문 커튼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함.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가구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 발코니/실외공간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우·오수 선출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벽면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됨.(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주방 상부장은 천장에서 이격되어 시공됨.
- 세대 환기,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시스템 적용 예정임.
-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 및 분배기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단위세대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방)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기본형은 세대환기 장치가 노출되어 시공될 예정임)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자동형 제품으로 에어컨 작동시 실외기 동작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고 실외기 정지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임.**
- 각 세대별 전기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전기시설) 제1항에 따라 계획하였고, 간선설비등은 “내선규정” 부록[표300-2-1. 간선의 수용율 표의 2. 분양주택, 고층주택(전기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의 수용율 표에 의거하여 산정 하였다.

### ■ 욕실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유상옵선/선택품목

- 유상옵선 품목 및 선택옵선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함
- 유상옵선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 평형별 유,무상옵선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및 기타 별도 유상옵선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 스마트홈

- IoT서비스제휴사(이하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에서 홈네트워크와 연결된 기기를 제어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가전기기를 단지별 “제휴사” 전용APP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휴사의 음성인식스피커 및 제휴사와 호환되는 가전기기등을 입주인이 개별 구매하여 “제휴사” 전용APP에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 호환되지 않는 가전기기들은 제조사의 APP 또는 가전기기별 전용 APP을 통해서만 제어 할 수 있고, 통신환경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은 제휴사가 지정한 일정기간을 무료로 이용하신후 계속하여 이용 하시려면 “제휴사”와 개별로 약정하여야 하고, 이때는 월 이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은 제휴사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사 전용APP은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과 통합하여 서비스 될 수 있고,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 무료 사용기간이후에 홈네트워크사 전용APP을 지원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지상 및 지하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되오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임의로 훼손 할 수 없다.

##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정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방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층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화재시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은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피시설내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를 개방시 해당층과 직하층에 경보음이 발생되므로 화재시 피난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탈출형 대피시설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고, 위층 하향식 피난구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해당층의 탈출형 대피시설을 통하여 세대내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평상시 탈출형대피시설의 방화문 시건장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피공간에 탈출형 대피시설이 시공되며 탈출형 대피시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는 본 공사시 위, 아래층과 교차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84A, 84C, 117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확장기본형(유상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견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운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풍통, 위생기구류, 약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 에어리어,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방냉풍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단지모형, 커뮤니티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 등 포함),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단지내

실제 계획고에 의한 시공으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 전세대내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은 연출용 전시조명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람.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운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풍통, 위생기구류, 약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X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준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겨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설치함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함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으로 공사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성능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div> <p>1. 공동주택명 : 포항 펜타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주)동화건설                  3.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런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6블록)                  4. 성 능 등 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 colspan="2">가. 소용 관련 등급</th> <th colspan="2">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th> </tr>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경양속력 차단성능</td> <td>★★★★</td> <td>17. 일조권 유지속 조양속</td> <td>-</td> </tr> <tr> <td>2. 풍양속력 차단성능</td> <td>★★★★</td> <td>18. 자연기압 특기율</td> <td>★</td> </tr> <tr> <td>3. 격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 <td>★★</td> <td>19. 음파면적률</td> <td>★</td> </tr> <tr> <td>4. 외풍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 <td>★</td> <td>20. 비소음 조성</td> <td>★★★★</td> </tr> <tr> <td>5. 외풍을 감쇄수 소음</td> <td>★</td> <td>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거율 적용의 적용</td> <td>★★★★</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연성</td> <td>★★</td> </tr> <tr> <td>3. 수직충격성 완충부분</td> <td>★</td> </tr> <tr> <td>4. 수직충격성 완충부분</td> <td>★★</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기준대기외 용해학적 가해</td> <td>-</td> </tr> <tr> <td>2. 과도한 기체배출 저감</td> <td>-</td> </tr> <tr> <td>3. 도장사 절감량률 최소화</td> <td>-</td> </tr> <tr> <td>4. 일조권 조절장치 채택의 적합성</td> <td>-</td> </tr> <tr> <td>5. 에너지 성능</td> <td>★★★★</td> </tr> <tr> <td>6. 에너지 소비량 및 편차계수</td> <td>★</td> </tr> <tr> <td>7. 입체냉매냉각 적용</td> <td>-</td> </tr> <tr> <td>8. 개관스캐너를 이용한 적용</td> <td>-</td> </tr> <tr> <td>9. 소음측 정소음 제한 측정물류의 사용 방지</td> <td>★★</td> </tr> <tr> <td>10. 환경상선언 제출(LEED)의 사용</td> <td>★★</td> </tr> <tr> <td>11. 적당소 가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2. 가연성인 가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3. 축적열원 차단 가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4. 녹색건축가재의 적용 비율</td> <td>-</td> </tr> <tr> <td>15. 생활용가중가방위 보관시설 설치</td> <td>★★★★</td> </tr> <tr> <td>16. 벽돌벽면</td> <td>★★</td> </tr> <tr> <td>17. 벽돌 및 유출기까지 사용</td> <td>★★</td> </tr> <tr> <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용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단기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단절성</td> <td>★★★★</td> </tr> <tr> <td>3. 자일계구조장 및 가변적도로의 계획성</td> <td>★★</td> </tr> <tr> <td>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진입도로의 확충률의 계획</td> <td>★★</td> </tr> <tr> <td>6. 운영·관리 관련 문서 및 대응일 계획</td> <td>★★★★</td> </tr> <tr> <td>7. 사용자 대응일 계획</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9. 단위계획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1. 계단너리 열화 및 시설공간별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 <td>★</td> </tr> <tr> <td>13. 중립도르의 운영시스템</td> <td>★★</td> </tr> <tr> <td>14. 방범안전 콘택트</td> <td>★★</td> </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입지 및 정보설비</td> <td>★</td> </tr> <tr> <td>2. 계단벽면</td> <td>★★</td> </tr> <tr> <td>3. 내화성능</td> <td>★★</td> </tr> <tr> <td>4. 수평계단벽면</td> <td>★★</td> </tr> <tr> <td>5. 복도 및 계단 후조너리</td> <td>★★★★</td> </tr> <tr> <td>6. 계단설비</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9월 01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부 동 산 원</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양속력 차단성능	★★★★	17. 일조권 유지속 조양속	-	2. 풍양속력 차단성능	★★★★	18. 자연기압 특기율	★	3. 격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19. 음파면적률	★	4. 외풍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0. 비소음 조성	★★★★	5. 외풍을 감쇄수 소음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거율 적용의 적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직충격성 완충부분	★	4. 수직충격성 완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대기외 용해학적 가해	-	2. 과도한 기체배출 저감	-	3. 도장사 절감량률 최소화	-	4. 일조권 조절장치 채택의 적합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량 및 편차계수	★	7. 입체냉매냉각 적용	-	8. 개관스캐너를 이용한 적용	-	9. 소음측 정소음 제한 측정물류의 사용 방지	★★	10. 환경상선언 제출(LEED)의 사용	★★	11. 적당소 가재의 사용	★★	12. 가연성인 가재의 사용	★★	13. 축적열원 차단 가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가재의 적용 비율	-	15. 생활용가중가방위 보관시설 설치	★★★★	16. 벽돌벽면	★★	17. 벽돌 및 유출기까지 사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용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단절성	★★★★	3. 자일계구조장 및 가변적도로의 계획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진입도로의 확충률의 계획	★★	6. 운영·관리 관련 문서 및 대응일 계획	★★★★	7. 사용자 대응일 계획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계획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계단너리 열화 및 시설공간별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중립도르의 운영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택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입지 및 정보설비	★	2. 계단벽면	★★	3. 내화성능	★★	4. 수평계단벽면	★★	5. 복도 및 계단 후조너리	★★★★	6. 계단설비	★★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p> <p style="font-size: 0.8em;">■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채호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td> <td>: 포항펜타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td> <td>: 21-주-에너지-0274</td> </tr> <tr> <td>준공연도</td> <td>: 20240228</td> <td>평가자</td> <td>: 김상훈</td> </tr> <tr> <td>주 수</td> <td>: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런리 일원(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6블록)</td> <td>인증기관</td> <td>: 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층 수</td> <td>: 지하2층 / 지상29층</td> <td>분명기관</td> <td>: 한국에너지원</td> </tr> <tr> <td>면적</td> <td>: 106,837.6934(㎡)</td> <td>유효기간</td> <td>: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주택 용도</td> <td>: 공동주택</td> <td></td> <td></td> </tr> <tr> <td>설 계 자</td> <td>: 최도건축사 사무소</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1em;">인증 등급: 1+등급</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요구량</th> <th>현재등급</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h>배출량</th> </tr> <tr> <td>에너지소비량</td> <td>60.1</td> <td>1+</td> <td>1+</td> <td>48</td> <td>22.8</td> </tr> <tr> <td>에너지소비량</td> <td></td> <td>2+</td> <td>2+</td> <td>56</td> <td></td> </tr> <tr> <td>에너지소비량</td> <td></td> <td>3+</td> <td>3+</td> <td>64</td> <td></td> </tr> <tr> <td>에너지소비량</td> <td></td> <td>4+</td> <td>4+</td> <td>72</td> <td></td> </tr> </tabl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p>에너지 소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냉방</td> <td>20.0</td> <td>46.1</td> <td>36.4</td> <td>9.4</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3.0</td> <td>23.2</td> <td>7.7</td> </tr> <tr> <td>조명</td> <td>9.4</td> <td>8.0</td> <td>24.6</td> <td>4.2</td> </tr> <tr> <td>합계</td> <td>60.1</td> <td>33.3</td> <td>91.1</td> <td>19.6</td> </tr> </tbody>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주의: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변경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제11조제5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07월 23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한국부동산원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포항펜타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1-주-에너지-0274	준공연도	: 20240228	평가자	: 김상훈	주 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런리 일원(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6블록)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분명기관	: 한국에너지원	면적	: 106,837.6934(㎡)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택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최도건축사 사무소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현재등급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60.1	1+	1+	48	22.8	에너지소비량		2+	2+	56		에너지소비량		3+	3+	64		에너지소비량		4+	4+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냉방	20.0	46.1	36.4	9.4	급탕	30.7	33.0	23.2	7.7	조명	9.4	8.0	24.6	4.2	합계	60.1	33.3	91.1	19.6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양속력 차단성능	★★★★	17. 일조권 유지속 조양속	-																																																																																																																																																																																																																				
2. 풍양속력 차단성능	★★★★	18. 자연기압 특기율	★																																																																																																																																																																																																																				
3. 격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19. 음파면적률	★																																																																																																																																																																																																																				
4. 외풍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0. 비소음 조성	★★★★																																																																																																																																																																																																																				
5. 외풍을 감쇄수 소음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거율 적용의 적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직충격성 완충부분	★																																																																																																																																																																																																																						
4. 수직충격성 완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대기외 용해학적 가해	-																																																																																																																																																																																																																						
2. 과도한 기체배출 저감	-																																																																																																																																																																																																																						
3. 도장사 절감량률 최소화	-																																																																																																																																																																																																																						
4. 일조권 조절장치 채택의 적합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량 및 편차계수	★																																																																																																																																																																																																																						
7. 입체냉매냉각 적용	-																																																																																																																																																																																																																						
8. 개관스캐너를 이용한 적용	-																																																																																																																																																																																																																						
9. 소음측 정소음 제한 측정물류의 사용 방지	★★																																																																																																																																																																																																																						
10. 환경상선언 제출(LEED)의 사용	★★																																																																																																																																																																																																																						
11. 적당소 가재의 사용	★★																																																																																																																																																																																																																						
12. 가연성인 가재의 사용	★★																																																																																																																																																																																																																						
13. 축적열원 차단 가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가재의 적용 비율	-																																																																																																																																																																																																																						
15. 생활용가중가방위 보관시설 설치	★★★★																																																																																																																																																																																																																						
16. 벽돌벽면	★★																																																																																																																																																																																																																						
17. 벽돌 및 유출기까지 사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용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단절성	★★★★																																																																																																																																																																																																																						
3. 자일계구조장 및 가변적도로의 계획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진입도로의 확충률의 계획	★★																																																																																																																																																																																																																						
6. 운영·관리 관련 문서 및 대응일 계획	★★★★																																																																																																																																																																																																																						
7. 사용자 대응일 계획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계획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계단너리 열화 및 시설공간별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중립도르의 운영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택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입지 및 정보설비	★																																																																																																																																																																																																																						
2. 계단벽면	★★																																																																																																																																																																																																																						
3. 내화성능	★★																																																																																																																																																																																																																						
4. 수평계단벽면	★★																																																																																																																																																																																																																						
5. 복도 및 계단 후조너리	★★★★																																																																																																																																																																																																																						
6. 계단설비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포항펜타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1-주-에너지-0274																																																																																																																																																																																																																				
준공연도	: 20240228	평가자	: 김상훈																																																																																																																																																																																																																				
주 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런리 일원(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6블록)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분명기관	: 한국에너지원																																																																																																																																																																																																																				
면적	: 106,837.6934(㎡)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택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최도건축사 사무소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현재등급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60.1	1+	1+	48	22.8																																																																																																																																																																																																																		
에너지소비량		2+	2+	56																																																																																																																																																																																																																			
에너지소비량		3+	3+	64																																																																																																																																																																																																																			
에너지소비량		4+	4+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냉방	20.0	46.1	36.4	9.4																																																																																																																																																																																																																			
급탕	30.7	33.0	23.2	7.7																																																																																																																																																																																																																			
조명	9.4	8.0	24.6	4.2																																																																																																																																																																																																																			
합계	60.1	33.3	91.1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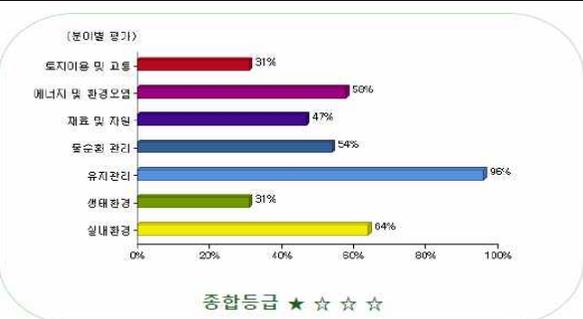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 명: 포항 현대시티 A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주: (주)동화건설 준공(예정)일: 2024.02.28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연리 111 (포항현대도시산업지구 사업부) 층 수: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105,883.4986㎡ (평가연면적: 105,443.1236㎡)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워드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21-338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2021.09.01.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 2019-248호, 인명기준 준용세칙(2020.04.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1-505-048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1년 05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	이름	(주) 동화건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729, 동화주택 3층 (동인동4가)
발주자	이름	포항 현대시티 A5블록 공동주택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연리 포항용한기술산업지구 A5블록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홍Io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2021년 11월 0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인)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 중요도 I	VII - 0.2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5,162,304,47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3,338,841,000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687,944,000
	기간이자	487,537,939			용접공사	137,588,000		난방설비공사	415,941,000

		필요적 경비	788,136,583			조적공사	1,005,457,000			가스설비공사	464,627,000
		그밖의 비용	6,759,859,307			미장공사	1,206,548,000			자동제어설비공사	455,101,000
		계	23,197,838,299			단열공사	1,301,802,000			특수설비공사	480,502,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2,540,102,000	기계 설비	방수·방습공사	1,094,360,000	그밖의 공종	공조설비공사	2,787,778,7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1,735,736,000		그밖의 공사비	전기설비공사	6,561,930,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2,703,092,000			정보통신공사	6,032,742,000	
		옹벽공사	-		금속공사	1,090,127,000			소방설비공사	4,013,361,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흡통공사	201,091,000			승강기공사	1,185,381,000	
		우·오수공사	216,967,000		창호공사	3,439,721,00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492,640,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306,035,000				이윤	2,645,939,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59,302,000		타일공사	1,370,596,000		계	104,668,079,700		
		도로포장공사	539,771,000		돌공사	793,781,000		간접비	설계비	6,350,255,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98,974,000		도장공사	1,370,596,000			감리비	2,787,778,700	
		정화조 시설 공사	207,441,000		도배공사	814,949,000			일반분양 시설경비	10,054,571,000	
		조경공사	1,354,721,000		수장공사	1,206,548,000			분담금 및 부담금	11,642,135,000	
	부대시설공사	480,502,000	주방용구공사	2,707,325,000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1,688,109,000	그 밖의 건축공사	1,362,129,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19,903,300,665				
		가시시설물공사	1,322,969,000	급수설비공사	1,428,807,000	그 밖의 비용	18,761,481,973				
		지정 및 기초공사	2,723,201,000	급탕설비공사	1,248,883,000		합 계		197,365,440,337		
		철골공사	1,301,802,000	오수·배수설비공사	1,746,320,0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항 목		심사신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차 액	산출근거
택지비 가산항목	법적 택지 이자	487,537,939	487,537,939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제세공과금	788,136,583	788,136,583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말뚝박기 공사비	2,421,636,533	1,961,525,592	-460,110,94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5,923,868,785	4,798,333,715	-1,125,535,07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9,621,179,840	8,035,533,829	-1,585,646,01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2,469,654,107	2,469,654,107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홈네트워크	5,586,825,000	4,860,537,750	-726,287,25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1,565,219,000	1,361,740,530	-203,478,47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1,859,815,000	1,506,450,150	-353,364,85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계환기설비	4,371,844,000	3,541,193,640	-830,650,36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2,399,028,819	2,399,028,819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1,649,953,188	1,649,953,188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351,856,280	285,003,587	-66,852,69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전기자동차충전시설		174,000,000	-	-174,000,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삭감
	법정초과조경시설설치비		337,894,000	-	-337,894,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삭감
	분양보증수수료		701,935,271	687,920,202	-14,015,06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21,468,024,665	18,761,481,973	-2,706,542,69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의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의 층고 : 지하2층:3.5m, 지하1층:4.2m
- 주차장 차로의 유효 높이 : 지하2층 : 2.3m, 지하1층:2.7m

■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 MDF실 1개소, 방재실 1개소, 경비실 2개소, 재활용품창고 1개소, 피트니스센터 1개소,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1개소, 당구장 및 탁구장 1개소, 남여독서실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경로당 1개소, 입주민회의실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북카페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맘스스테이션 1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빗물처리시설 1개소 등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 정보통신
회사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엔씨	서한컨설팅(주)
감리금액(원)	1,697,539,800	604,038,900	486,2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3412021-101-0001000호	₩138,115,4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내용
<p>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p>	<p>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li> <li>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li> <li>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li> </ol> <p><b>【보증기간】</b>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li> <li>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li> </ol>
<p>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p>	<p>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b>【공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p>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p>	<p>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li> <li>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li> </ol> <p><b>【대물변제】</b>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같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허위계약】</b>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b>【입주금】</b>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p> <p>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p> <p>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p> <p>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훈오도,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음선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감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li> <li>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li> </ol>
	<p><b>【보증채권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동화건설	(주)동화건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729(3층)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729(3층)
법인등록번호	170111-0209537	170111-0209537

■ **건본주택**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29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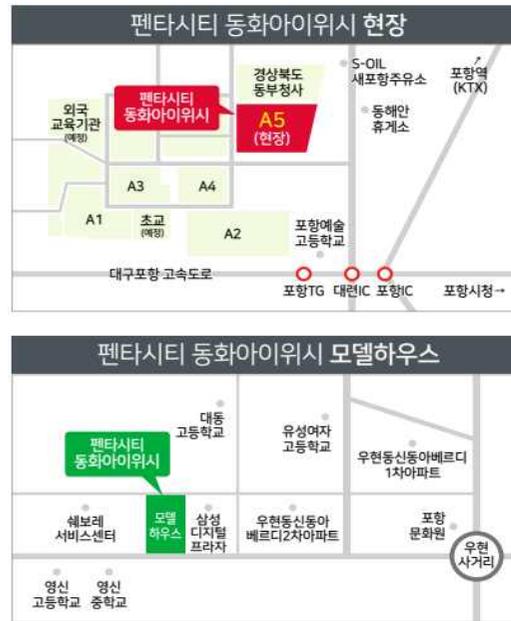
■ **홈페이지** : <http://pentacity-iwish.com/>

■ **분양문의** : 054)286-73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건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람.

XI 조감도 및 위치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사업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5
- 건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296
- 홈페이지 : <http://pentacity-iwish.com>
- 분양문의 : ☎ 054-286-7300

※상기 CG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